

한국 기업의 브랜드 국제화 설립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기업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 억 링깃(말레이시아 화폐단위: 1 링깃 = 350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국제무역산업부 장관인 Rafidah Aziz에 따르면, 이 기금이 특허등록을 포함한 기업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목적,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식을 취한 이유는 브랜드 향상이라는 목적의 용자금을 활용할 기업이 적다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동 펀드는 기업이 50% 비용을 지출하고 기금에서 50%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한 기업당 지원액의 상한선은 2백만 링깃이다.

국제무역산업부는 동 펀드를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위원들은 무역부, 산업개발공사, 중소기업개발원, 디자인협회, 브랜드협회 등에 속한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다른 부처와도 협력할 예정인데, 예컨대 농림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육성할 만한 농업관련 브랜드의 조사에 대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The Business Times Singapore

한국 실용신안제도 워킹그룹

특허청이 주관하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제1회 실

용 신안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워킹그룹 위원은 大渕 哲也 동경대 교수를 단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石田 喜樹 일본변리사회 부회장

臼井 清文 사단법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업기술위원회

지적재산부회 위원

大渕 哲也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尾形 健幸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특허위원회

위원장

熊谷 健一 큐슈우(九州)대학 대학원 법학연구원 교수

志村 勇 마쓰시다(松下)전기산업주식회사 IPR Operation

Company 지재개발센터 소장

坪田 伸治 일본상공회의소 이사·산업정책부장

戸田 裕二 일본지적재산협회 특허제2위원회 위원장

長岡 貞夫 릿쿄(一橋)대학 Innovation 연구센터 교수

牧野 利秋 YUASA and HARA 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변리사

溝尾 真一 Funai(船井)전기(주) 사업본부 지적재산부 부장

대리

吉田 久幸 주식회사 디카라 기업법무실장

회의는 현행 실용신안제도의 현황과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사무국의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무국 발제는 무심사 등록/사후평가형의 기술 보호제도의 도입시에 염두에 두어졌던 개발 리드타임 및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조기실시가 필요한 기술의 보호라고 하는 요청은 현재에도 존재하는지 여부와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2가지 보호제도를 병존시키는 것의 의의, 효과는 인정되는가 등의 주제 등으로 요약된다.

사무국의 배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심사제도 도입 당시(평성5년) 구실용신안제도 출원건수가

약 7만7천건에 달하던 것이 현재 약 8천건으로 감소되었지만 사무국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도 권리의 조기설정이라는 목표는, 현재 특허제도가 그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약 22개월 소요되는데 비해 실용신안의 경우 약 5개월의 기간에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단, 1998년 기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8.1년으로 현행 6년의 실용신안 존속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안정성과 관련하여도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신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비율은 구 실용신안권에 관한 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비율과 거의 같다고 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책임형의 제도인 기술평가서 제시 후,

권리행사제도가 제기되는 우려에 비하여 상당히 부적절한 권리행사를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실용신안법의 이용 확대가 촉진된다면 특허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수가 감소함으로써 특허심사의 신속화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발명·고안의 보호제도 전체의 유지에 관계되는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보다 좋은 형태로 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무국의 발제에 대하여 자유토의에서 위원으로부터 의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에 대해 평성 5년의 법개정에 의해 무심사 등록 주의를 도입했을 때는, 권리 남용에의 위구심이 크고, 그것을 방지하도록 제도 설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회 원 동 정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중국 판매 상반기 1위

現代重工業(代表: 閻季植, 崔吉善) 건설장비 부문이 중국 시장에서 놀라운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공정기계협회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굴삭기 판매실적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총 4천 18대의 판매고를 올려,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한 판매실적 2천 1백 19대 보다 약 90% 증가했으며, 지난 한해 실적이 3천 8백 98대를 훌쩍 뛰어 넘는 기록이다.

지난 95년 상주현대(常州現代)합자사 설립으로 중국에 진출한 이후, 2000년 1천 88대, 2001년 1천 9백 70대, 2003년 3천 8백 98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최초 상반기 굴삭기 4천대 이상 판매 올 8천대 판매 목표 달성 무난할 듯

특히, 現代重工業의 이번 실적은 중국 건설장비 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2002년에 이어 2003년 상반기 실적 1위에 해당하며, 半期 4천대 판매시대를 여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같은 판매실적 호조에 대해 現代重工業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적합한 경

제적이고 지형에 맞는 장비 개발 △금융 판매 실시 △전국적인 A/S망 구축 △상주 공장의 생산능력 1만대 확충 △북경 법인 신설 등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현지화 노력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現代重工業은 이 같은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굴삭기 8천대 판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계획, 남수북조 운하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가 줄을 잇고 있어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 5월 시판하고 있는 21톤급 최신 모델 ROBEX 225LC-7 굴삭기가 현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출처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리의 존속 기간이 짧은 것, 실용 신안 기술 평가서를 얻어도 최종적으로는 자기책임인 것, 보호 범위가 좁은 것 등, 현행의 실용신안제도는 디메리트(demerit)가 많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것이 아닌가. 첨단 기술에 대해 적확한 심사를 거쳐 권리가 주어지는 특허제도로 일관하는 것(一本化)이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합치하고 지식재산입국에도 걸맞다. 실용 신안제도는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한 것은 아닌가. 수준이 낮은 기술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준이 높은 기술에 대해 얻을 수 있던 특허권의 효과가 제한된다고 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소송 제기 건수가 적은 것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기본적 기술을 응용해 생활에 관련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최종소비자 산업(川下産業)을 보호하는 일도 지식재산입국을 향해 중요하고, 그러한 기술의 보호에 적절한 실용 신안 제도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외로부터의 모방품 대책으로서 조기에 권리 등록이 가능한 실용 신안 제도는 유효하지 않는가.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에는, 특허권의 취득이 곤란한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 요망이 뿌리깊다. 의장출원 건수와 비교하면,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반드시 과도하게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향후의 검토에 대해 실용신안제도의 이용도가 일본보다 높은 중국이나 독일 등 타국의 제도와도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잠재적인 제도의 이용자도 시야에 넣은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용이 한정적인 것은, 제도가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인가, 제도 자체의 의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가, 기업의 규모나 업태에 따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도 실태의 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가.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하는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보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는 안되는가. 특허제도와 조정이나 정정 등에 대해 채운 논의를 실시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출처 일본 특허청

특허의 품질에 관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 하원 법사위원회,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권 소위원회는 “특허의 질적 개선(Patent Quality Improvement)”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동 청문회에는 미국 지식재산권 법 협회(AIPLA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The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and BITS, Intel Corporation을 대표하여 참석한 증인과 Georgetown University의 교수도 참석하여 미국 특허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동 참석자들의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ouse.gov/judiciary/courts072403.ht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다음은 이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이다.

Charles E. Van Horn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법률회사의 파트너, AIPLA를 대표해서 참석)

USPTO가 결정한 특허의 질은 USPTO 운영

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심적 노력이다. 법원의 소송에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USPTO의 사용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강력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의 투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PLA는 USPTO의 운영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특허 및 상표 등록에서 부여된 권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AIPLA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법원, 인터넷 및 지식재산권 소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 제1561호 (H.R.1561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Fee Modernization Act of 2003)에서 나타난 내용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심사기간 중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절차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출원인에 의한 강제적 선행기술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현재 심사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 보고서와 같은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 등과 함께, 결정계(inter partes) 재심사, 금지명령,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 악의적 침해에 관한 법률 개선에 대한 제안도 들어 있다.

Mark Kesslen (J.P. Morgan Chase & Company의 경영이사 겸 부 고문관,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s and BITS를 대표해서 참석)

금융기관에서의 특허 변호사는 잘 지켜지고 있는 비밀과 같다.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개인 지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는 하찮은 특허 주장에 맞서느라 바쁘며, 이는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코 끝이 나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 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업 등은 수많은 특허 침해의 하찮은 주장에 위협 받고 있다. 계류중인 침해 주장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1997년 이후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특허출원이 USPTO에서 절차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어도 4년이 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곧 금융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찮은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이러한 하찮은 주장으로부터 금융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며, 물론 특허법하의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보호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선행 사용자의 방어권의 개선, 금지적 구제에 대한 기준 설정, 손해배상 규칙의 명확화, 특허등록 후 이의신청 절차의 설립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David M. Simon (Intel Corporation의 수석 특허 고문관)

특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첨단 기술에 중요하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성장의 주요 요소였다. 특히 IT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특허의 강력한 보호는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미국 기업은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부주의하게(improvidently) 부여된 특허는 특허 심사관들의 저임금, 불충분한 자원을 포함한 미국 특허상표청 내의 결함 등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부주의하게 부여된 특허는 남용에 대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염려하는

바이다. 이렇게 특허제도의 최하위 레벨에서 기능하고 추구하는 사람(bottom feeder), 즉 저질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여 이를 무기로 소송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흔해 지면서 Intel은 이들에 대한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s¹⁾” 그러므로 Intel은 의회가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결정 짓는 기준에 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patent trolls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Intel은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허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출원인의 의무적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제출은 필요없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비생산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정계 재심 사의 강화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John R. Thomas (Georgetown University 법대 교수)

양질의 특허는 한마디로 유효한 특허이다. 양질의 특허는 법원에서 신뢰성이 있게 집행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허 유효성 소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기술 이전의 도구로서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혁신 혹은 상업적 거래와 같은 가치 극대화 활동 관련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강화하게 된다. 반면, 저질의 특허는 해로운 결과, 즉 혁신율의 감소, 특허를 기반하는 거래의 저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가격으로 나타난다.

특허 질의 개선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2가지를 제안하면, (1) 특허 출원인 책임의 신중한 확대, (2) 더 많은 대중의 참여이다. 먼저, 특허는 혁신가에게 강력한 상업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기

1) 복유럽신화 트롤(지하나 동굴에 사는 초자연적 괴물로 개인 또는 난쟁이로 묘사됨)

때문에, 출원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고 있다. 두번째로, USPTO는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적(private) 특허 심사관”을 더 잘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미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Mexico의 WTO 대사, 의약품특허 협정 협의가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

9 월에 Mexico의 Cancun에서 있을 WTO 146개국 모든 회원의 모임에 대한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하여 Canada의 Pierre Pettigrew 가 초청한 25개국 장관들이 Montreal에 있다.

예전에 한 고위 외교관이 HIV/AIDS 및 밀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된 의약품의 싼 복제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가난한

神奈川과학기술 아카데미, cDNA 합성 방법의 특허 취득

神奈川현 등이 출자하는 재단법인 「神奈川과학기술 아카데미」는 단백질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完全長 cDNA」의 합성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 미국, 유럽에서 취득해, 국내에서의 공여처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cDNA를 사용하면, 특정의 단백질을 시험관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인간게놈 해독 완료 후, 단백질 연구가 세계적 관심사인데 동아카데미는 「이러한 기본적 기술로 공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명활동에 불가결한 단백질은 10만종 이상 있다고 여겨지는데 합성이나 작용에 관한 정보는 모두, 세포안의 DNA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들에게 그 의약품들이 역으로 부유한 국가들에게 밀수되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Mexico의 WTO 대사인 Eduardo Perez Motta는 “일부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난한 국가에게 특허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식적 합의를 수반하는 의장의 말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AP통신에게 말했다.

한편 Perez Motta는 이러한 문제가 Mexico에서 있을 9월 WTO전체회의 전에 해결될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WTO 규칙들은 이미 공중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이 특허를 무시하고 보다싼 국내의 일반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만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대다수의 가난한

국가들은 현행의 WTO 규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02년 12월에 모든 WTO회원국들은, 미국이 가난한 국가들이 외국의약품제조업체에게 그들의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한편, 미국제약회사들은 가난한 국가로 가기로 한 의약품들이 부유한 국가들로 밀수입 될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한 합의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큰 개도국에 있는 일반의약품 제조업자들은 인도적인 목적보다는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러한 합의를 이용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교착상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의약품제조업자 및 가난한 국가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AP

DNA의 97%는 무의미한 염기 배열. 「단백질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이 cDNA다.

동 아카데미는 cDNA 중에서도 품질이 높은 「完全長(long chain)」의 것을, 9할 이상 확률로 합성하는 기술을 만들어 냈다.

발명한 加藤誠志 전프로젝트 연구실장에 의하면 cDNA의 합성 방법은 여러 종류 있지만, 불완전한 길이나 염기 배열의 좌우배치를 바꾸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었는데 加藤誠志는 그 문제점을 극복해 특허 취득에 도달했다.

그는 「이 기술이 단백질에의 이해를 깊게 하고, 신약 개발 등에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마이니찌신문

富士版印刷사, 콘텐츠유통사 업 Bitway로 BM특허 취득

版印刷사(TOPPAN PRINTING CO., LTD)는 동사가 운영하는 콘텐츠유통사업인 「Bitway」에 관하여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특허는 ISP, 콘텐츠제공자, 일반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혁신성과 편리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특허의 명칭은 “유상정보의 유통방법”으로서 동사가 1999년에 출원하였다.

Bitway는 동사가 1999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료콘텐츠 제공서비스로 idol gravure, 컴퓨터게임, 주간지·예능지의 기사, 어학·의학사전이라는 콘텐츠를 취급하고 있다.

이번 취득한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유저가 유상콘텐츠의 구입의뢰를 송신 (2) 이에 유저가 계약하는 ISP에서 유저인증과 요금 부과를 행하고, Bitway에 접근키의 발행을 의뢰, (3) 이 의뢰에 기초하여 Bitway가 접근키를 발행, 유저에게 송신 (4) 유저가 그 접근키를 Bitway에 송신, Bitway에서 접근키의 인증을 행한다. 유저는 인증이 정확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유저는 ISP에 의한 결제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신용카드번호 등을 화면상에서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ISP도 자사의 요금부과시스템을 이용하면서 Bitway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 콘텐츠제공자도 Bitway가 가진 판매채널을 이용하면서 사무작업에 짙기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즉 동 특허의 권리보호대상은 유상콘텐츠를 중개·제공하는 Bitway와 그 판매채널인 ISP가 된다. 현재 동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는 ISP로는 ASAHI-NET, OCN, DION, So-net, BIGLOBE, ODN, Panasonic hi-ho 등이 있다.

凸版印刷에서는 이번 특허취득으로 금후 보다 많은 유상콘텐츠 판매채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 특허 전체의 전략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일본 BIZTECH

미국 줄기세포연구진, 타 국가의 줄기세포관련 특허독점 우려

口 국의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2년 전 부시행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연구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타 국가가 동 분야의 특허를 독점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년 전 부시행정부는 낙태금지 운동가들이 태아로부터 추출한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과, 과학자들의 질병치료목적의 연구를 찬성하는 주장사이에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즉 그 당시 시점에서 이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70여개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새롭게 추출된 줄기세포에 대해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70여개의 줄기세포 중 일부는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일부는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 가능한 줄기세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12개도 배양액으로 쥐세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쥐 DNA와 쥐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텍에서 일하는 Robert Lanza 박사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마치 한 손은 묶어져 있는 채로 외국의 과학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영국, 싱가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 정부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Time Magazine

인도,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예정

인도의 산업통상장관 Arun Jaitley는 TRIPs에 맞추기 위하여, 인도는 1999년 및 2003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특허법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중·국가적 관심사항 특히 공중보건에서의 특허권의 몰수·취소 및 가격책정, 강제실시, 정부사용, 병행수입과 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하여 완전한 법률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5. 1. 1부터 시행될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70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은 국가적이고 대중적인 관심, 특히 인도에서의 공중보건에 관련된 관심들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룰 것이다. 1970년도 특허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Arun Jaitley는 지식경제의 출현은 지재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이윤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도는 지재권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 및 행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지역사회와 보조를 맞춰왔다고 말했다. 한편, Arun Jaitley는 강제실시권을 통하여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나라가 의약품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는 TRIPs와 공중보건상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이 9월에 멕시코 Cancun에서 개최될 WTO 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http://www.blonnet.com>

제5장 국제협력

일 본 특허청은 ASEAN등의 아시아 지역 등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신속하고 원활한 환경정비를 위해 JICA scheme¹⁾, WIPO 저팬 트러스트 펀드²⁾, 식물 신품종보호 국제동맹 (UPOV) 저팬트러스트 펀드 등을 이용한 전문가파견, 세미나의 개최, 연수생수용 등 인재육성·교재개발·정보화협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1) 일본국제협력사업단에서 주관하는 기술협력프로젝트의 일종으로 재외집단연수라고 한다.

2) 일본정부는 세계자식소유권기구(WIPO)에 대해 1987년부터 임의기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부금을 근거로 신탁기금 WIPO Japan Trust Fund가 조성되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역의 WIPO가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매년 장관회의, 심포지움 등의 개최, 연수생 및 자식재산권 연구생을 받아 일본특허청으로부터 전문가파견, 각국 특허청의 기계화, 근대화지원 등의 각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재 육성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 또한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장관회의를 개최

주요내용 : 각종 조사단의 수용, 연수생 수용, 전문가 파견

인도네시아

인재육성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추진. 또한 기계화·정보화 협력도 수행할 예정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한국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장관회의를 개최. 또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기계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01년 이후에는 년 1회 상표심사관회의와 의장심사관회의를 개최. 주로 특허검색 결과의 상호이용을 위한 심사협력, 정보화협력 등을 추진

주요내용 : 조사단의 수용

타이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추진. 2003년도에는 WIPO 저팬 트러스트 펀드를 활용해 타이지식재산국(DIP)의 사무처리 근대화를 계속하여 지원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심사협력 외

필리핀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주로 추진 2003년까지 JICA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에 의해, 특히, 실용신안, 의장의 사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의 산

업재산권 사무처리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베트남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중심으로 추진. JICA 프로젝트방식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체산권 사무처리시스템을 2004년을 예정으로 구축하여 베트남 국가지식재산권청(NOIP)의 산업체산권 사무처리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주요내용 : 장·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말레이시아

인재육성협력, 기계화·정보화 협력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 2002~2003년도에는 JICA개발조사에 의해 의장과 관련되는 사무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국(IPD)의 산업체산권 사무처리의 새로운 근대화를 지원

주요내용 : 단기 전문가 파견, 연수생 수용

출처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학대강

Framework programme¹⁾의 「생활의 질」분야의 한 사업으로서 약 2000만 유로의 자금을 투자하여 유럽의 생명공학정보 기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1개국의 25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유럽 분자생물 연구원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의 부서인 유럽 생명공학정보원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이 주관하는 "TEMBLOR"는 중요 생명공학연구 데이터의 자유로운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면적인 프로젝트이다.

많은 기존의 유럽에 있는 생명공학정보관련 기관들은 중요한 연구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TEMBLOR는 이러한 기존의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이러한 기존 데이터를 연결하여 각 데이터베이스간의 교류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바로 그 자료의 완전성과 쉽고 빠른 접근성에 있다고 동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EBI의 Graham Cameron부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생명공학 정보의 검색은 관련된 과학문헌이나 특허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출처 Cordis News

제3세대 유럽의 생명공학정보 기반 (Bioinformatics infrastructure)

최근의 Genomic sequencing에서의 성취물들과 그로 인한 잠재적인 사회로의 기여에 대한 이해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 분야의 과학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이용과 조직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정치인们都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 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5기

미국 연방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증정 및 우선권 결정 문제

현재 미국 의회 제108회(2003~2004년) 회기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토의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예산책정에 관한 우선권 결정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 의회 산하의 연

1) EU commission이 주도하는 EU차원에서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 현재 제5-6기 계획이 진행중에 있음

구기관인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보고서의 제목은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ing and Priority-Setting Issues, 108th Congress”로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어떤 분야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보고서이다.

연방 정부의 R&D 자금 책정 우선순위는 대통령과 국가적 선호에 반영하여 변경된다. 1980년대에는 국방 R&D가 지배적이었지만 클린턴 행정부 기간인 1990년대에는 연방 R&D의 약 50% 정도로 감소하였다.

비국방 R&D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을 추구하면서 우주 R&D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에너지 R&D가 부가적인 우선사항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는 보건 R&D가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의 9.11 사건 이후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 R&D가 다시 우선사항으로 떠올랐다.

2004년 회계연도의 대통령의 R&D 예산 요구액은 약 1,223억 달러로 2003년도의 세출 수준보다 약 4.4% 증가된 것이다. 이는 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재향군인사무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내무부, 항공우주국(NASA)에 대한 자금이 증가한 것이다. R&D 자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정부기관은 교육부, 상무부, 농무부, 교통부, 환경보호청(EPA)이다. 대 테러리즘 R&D 자금지원은 약 30억 달러가 요청되었다. 2003년 R&D 자금 지원에 관한 의회의 세출 관련 조치는 요구

된 수준을 초과하였다.

미국의 R&D 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R&D 부분은 국가 전체분의 27%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R&D 자금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R&D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증가되어야 하는지, 우선권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보건 및 비보건 분야간의 자금에 있어서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예산요구안에 “연방 과학기술” 예산항목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미래의 통일된 과학기술(S&T) 예산항목에 대한 전조가 될 것이다. 2004년 예산요구안에는 네트워킹과 정보기술, 기후변화과학, 나노기술을 위한 3개의 정부간 R&D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R&D 조정을 위한 다른 요청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우선권 책정 메커니즘, 내각수준의 과학기술기구, 기능적 R&D 예산책정, 그리고 의회 내에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재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부는 정부 실적 및 결과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고무되어, R&D 예산책정에 대한 몇몇 실적 측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정부 및 비평가들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실적별 예산 책정에는 더 나은 데이터 및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립과학재단(NSF)이 재정 관리 절차에 있어서 훌륭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은 R&D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관들을 실적 관리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중국, 4,200만장의 해적판 디스크 폐기

지 난 화요일에 중국 당국자들은 해외로 부터의 비난을 침묵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불법복제 단속 노력의 일환으로 4,200만장 이상의 밀수 및 불법복제된 CD를 목재분쇄기에 넣어서 폐기하였다.

몇 개월마다 한번씩 그러한 광경을 연출하는 중국정부는 이번 건을 가장 큰 규모의 불법 CD, DVD 및 다른 비디오디스크의 폐기라고 불렀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의 소굴이며, 중국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속하겠다고 장기적인 약속을 해왔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그러한 불법적 관행이 근절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 및 호주의 영사관 직원들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600만장의 불법 디스크가 분쇄되는, 광동 남부 지역의 산웨이 시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되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하였다. 한편 베이징에서는 120만개의 불법 오디오 비쥬얼 제품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밀수단속 정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및 국내에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가하고 있다.”고 관련 고위 공무원인 Mr. Gui 가 중국 중앙TV 뉴스에서 말하였다. CCTV는 수백만개의 디스크를 삼켜서 도로 및 주차장에다 영화와 음악의 잔재를 토해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목재분쇄기를 취재하였다.

디스크의 95% 이상이 중국으로 밀수되어 들어오고 있고, 지하 제조업체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40개의 불법 디스크 제조업체들이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불법위조행위로 인하여 서방기업

들은 매년 약 16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조치로까지 이르게 한 적도 있다.

출처 AP

일본 경찰청, 상반기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역대최고

일 본 경찰청은 「2003년 상반기에 있어서 주된 생활 경제 사범의 단속상황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검거사건 수 141건, 검거인원 220명으로, 모두 1990년 통계 시작 이후 최다이고, 특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건은 38건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50% 이상 증가되었다.

검거 사건의 내용에서 본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위조브랜드 사범으로는 일본방문 외국인에 의한 길거리 노점판매가 1/3 남짓으로, 특히 대도시가 눈에 띄고 해적판 사범으로는 PC 사용자에 의한 해적판 CD · DVD의 작성, 판매가 눈에 띈다. 네트워크 이용 사범으로는 인터넷 경매 이용의 부정상품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 보급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 소프트 등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저작권법위반(공중송신권 침해)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출처 일본지재정보국 IP News

지재권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지재권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센터가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티안에 대한 배포, 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